

‘빨간날’도 양극화...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못 쓴다

빨간날 유급휴가 지난해 69%→올해 66%
 정규직 81.8%...비정규직 41.5%...“절반 꼴”
 월급 500만원 ↑ 86%...150만원 ↓ 31.7%
 “임금 격차 심화에 설 권리 격차도 심화”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은 직장인일수록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지

어려웠다.
 직장갑질119는 28일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빨간날 유급휴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빨

간날 유급으로 쓸 수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1분기 69%에서 올해 1분기 65.6%로 3.3% 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성별로 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직장에서 지위가 낮으며, 임금이 적을수록 ‘빨간날 유급으로 쓸 수 있다’ 응답이 낮아졌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정규직(81.8%), 300인 이상(81.4%), 사무직(85.6%), 상위 관리자(78.1%),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은 대부분 빨간날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비정규직(41.5%), 5인 미만(41.1%), 비사무직(45.8%), 일반사원(45.5%), 월 급여 150만원 미만(31.7%)의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외 비조합원(62.8%)이 조합원(84.8%)보다, 여성(60.1%)이 남성(69.9%)보다, 교대제 근무자(68.4%)가 비교대제 근무자(51.3%)보다 빨간날 유급으로 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0만원 미만(-18.8%p) 근로자는 빨간날 유급휴가 응답이 지난해 1분기 50.5%에서 올해 31.7%로 1년 만에 18.8%p 낮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11.7%p), 비사무직(-8.8%p포인트), 일반사원(-8.3%p), 비정규직(-6.8%p) 근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급휴가 응답이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정규직, 사무직, 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위관리자급(-5.2%p)은 오차범위 이상으로 응답률이 낮아졌으나, 일반사원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설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설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충무공 탄신 제479주년, 종헌례
 충무공 탄신일인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에서 충무공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대표 한상우씨가 신위에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의 예를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평가급은 통상임금” 전·현직 임직원 항소심도 승소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도시공사가 임직원에게 차등 지급한 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원고 259명 중 18명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규모를 2억 4881만1930원이라고 봤다. 1심 2억 3588만 9800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사는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평가급’을 지급하면서 통상 임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전·현직 임직원들은 “평가급 중에서도 기본 연봉 월액의 75%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받는 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노조와도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했다. 노사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평가급에 대해 ▲1년 주기로 지급(정기성) ▲평가급 지급 제한 규정(정직·직위해제·휴직·공로연수 기간 등 개인적 특수성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일률성) ▲전년도 소정근로 대가로 성과등급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고정 지급되는 금액(고정액) 등을 들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가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공사 전·현직 직원 중 18명에 대해선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변용일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추가 국가 배상 판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은)는 지난 19일 A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당초 이들의 청구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300만원부터 8억원까지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 원고 중에는 6~7살에 수용돼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있었거나, 10살에 수용돼 11년간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 중 상당수는 강제수용 당시 15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들이었다”며 “가족 등 보호자가 있거나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납치돼 형제복지원 등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령기(초등학생 시기)에 있던 원고들 대부분이 강제노역, 폭행 등에 시달리며 장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복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말한다.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인된 사망자 수만 657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유사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슬비 기자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선정 지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 강화
 병원 이송·수용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전원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것으로,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개선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됐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

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필요할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관련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



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점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여수서 화학공장 화재...솔벤트 물질 누출

28일 오전 12시 28분께 전남 여수시 중흥동 한 화학공장에서 불이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초기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재로 인해 솔벤트 물질이 누출됐으며

밸브 차단은 완료했다. 현재 솔벤트 10t 정도가 배관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솔벤트 물질이 누출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기동취재본부